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goh@keei.re.kr)

1. 서론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¹⁾ 파리 당사국총회는 회의 종료 공식시한인 12월 11일(금)을 하루 넘기면서 12월 12일 저녁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하면서 4년여에 걸친 신기후체제 협상을 종료하였다.

금번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약 36,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개막일인 11월 30일에는 전세계에서 150개 국가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여 파리협정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2014년 9월 23일 뉴욕에서 120여개 국가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UN기후정상회의’의 개최에 이어 또 한 번의 범세계적인 정치적 행사였다. 150개 국가의 국가 정상들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 한 주제로 모인 것은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적 행사로서 주목받았다. 파리 당사국총회는 201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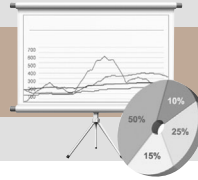
협상회의가 개시된 이후,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4년여의 협상을 마무리한 역사적 총회이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각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되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파리협정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하여 세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고는 파리협정의 개관에 이어 파리협정에서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파리 당사국총회는 2건의 중요한 문서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다. 또 하나는 매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결정문(1/CP. 21)이다.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문서는 파리협정이다. 그러나 결정문도 파리협정 못지 않게

1) 이와 병행하여 제1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 11)도 개최됨.



중요한 문서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리협정에 담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문에 담았다. 또한, 국가간에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당사국 총회 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은 결정문을 통해 추후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리고, 향후 2020년 이후에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도 결정문에 담았다.

최종합의된 파리협정은 전문과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15조부터 21조는 당사국총회, 사무국 등 조직에 대한 사항과, 발효요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중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국가여건을 부가적 요건으로 달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최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적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위협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 원주민의 권리, 어린이, 취약계층, 여성, 세대간 형평성도 강조하고 있다. 대지(Mother Earth), 기후정의 등의 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었다. 지속가능한 생활패턴 및 생산과 소비상의 지속가능성도 강조되었다.

내용에 대한 사항은 1조부터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에서 핵심적 사항을 간략히 살펴본다.²⁾

제1조는 파리협정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제1조에 있는 정의가 파리

협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조는 파리협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한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후 복원력(resilience)의 중요성과 저배출 발전 및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은 ‘상이한 국가여건’(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이라는 또 다른 요소와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되었다.

제3조는 일반의무로서 모든 국가가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 투명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규정하였다.

제4조는 파리협정의 핵심규정중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감축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는 용어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는 제4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감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능력형성, 투명성 등의 모든 요소에 적절히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제4조 1항은 2℃/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장기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조속한 기간에 범지구적으로 배출정점을 달성하고, 이어 금세기 하반기

2) 파리협정에서 각 조항에 대한 제목은 없음. 그간 협상과정에서 일정한 제목 하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협정이 마무리되면서 제목은 협정에서 없애고 조항만을 남겨둬.



기에는 순배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4조의 여타 규정에서 국가기여의 성격으로서 진전의 원칙, 최고의 의욕, 5년 주기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조 19항은 장기 저배출 발전 전략의 수립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제5조는 산림 등 흡수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력적 접근법, 시장메카니즘, 그리고 비시장 메카니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장 관련 규정은 당사국간에 이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회의 마지막 날까지도 파리협정에 시장 관련 조항이 규정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협력적 접근법, 시장메카니즘, 그리고 비시장메카니즘의 3가지 조항에 대해 규정의 완성도 및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7조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8조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9조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재원공여와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여타 국가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재원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결정문에 연간 1,000억 달러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10조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감축과 적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11조는 개도국의 능력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능력배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12조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공공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교육, 훈련, 공공인식 제고, 공공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3조는 투명성 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감축행동에 대한 투명성 체제와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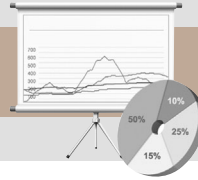
제14조는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이행상황에 대해 5년 주기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점검 결과는 각국의 국가기여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제20조에서 2016년 4월 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결정문을 통해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21조는 파리협정의 발효요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발효요건으로서 55개 국가의 비준과 동시에 전지구 배출량 약 55% 이상의 국가가 비준할 때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감축 관련 주요내용

본 절은 파리협정 핵심중의 핵심사안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제2조에



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4조에서 종합이행 점검을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2조는 파리협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증진함에 있어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을 강화함을 목표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이 감안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형평성 원칙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과 ‘상이한 국가여건’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범지구적 대응 강화를 위해 장기 온도목표, 적응, 재정의 3가지에 대해 규정하였다.

(a)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기온상승 제한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크게 낮출 것임을 인식한다. 본 항은 협상 내내 상당한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온도목표의 명시를 주장하는 군소도서국 및 EU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및 여타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미국 등은 정성적 목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 나아가 1.5℃를 장기목표의 지향점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항이 파리협정의 상징적 조항이 되었다.

(b)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능력을 증진시킨다. 기후복원력과 저배출 발전을 조성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식량생산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한다.

(c) 재정흐름이 저배출 발전과 기후복원적 발전을 향한 경로에 합치되도록 한다.

제4조는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협상 끝에, 감축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감축 및 적응, 그리고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기여’, 즉 영어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으로 표기하였다.³⁾

제4조 1항은 파리협정 제2조에 규정한 장기 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세가지 단계로 규정하였다. 첫째로, 온실가스의 전지구적 배출정점을 조속한 시기에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배출정점은 보다 늦게 달성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 둘째로, 배출정점 도달 이후에 최신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급속한 배출감축을 이행한다. 셋째로, 금세기의 후반기에 흡수와 배출의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노력의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흡수와 배출의 균형은 순배출 제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4조 2항은 개별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기여/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hall’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어서 각국은 국가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감축수단을 추구(should)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본고에서는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국가기여/감축’으로 병기함.

제4조 3항은 ‘국가기여/감축목표’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주기적 ‘국가기여/감축목표’는 기존 수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과 상이한 국가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 4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가기여/감축목표’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경제 전체에 대해 절대량의 감축목표(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경제 전체에 대한 감축목표 또는 제한목표(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절대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차이를 두고 있다. 개도국은 BAU 목표나 탄소원단위 목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제4조 5항은 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증가는 개도국의 의욕상승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있다.

제4조 6항은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의 ‘국가기여/감축목표’ 형식에 관한 사항이다.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는 저배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행동 등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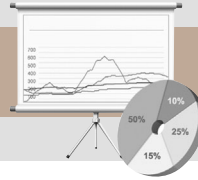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여/감축목표’의 형식이 상당히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4조 7항은 적응행동을 통한 부수적 감축편익이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다.

제4조 8조는 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국가는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목록은 추후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결정문 para. 27).⁴⁾

- 기준연도(reference point, including a base year)
- 계획기간(time frames and/or periods for implementation)
-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이때 scope은 산업·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부문, coverage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에 따른 범위를 의미
- 목표수립 계획절차(planning processes)
-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추정 시에 사용되는 가정 및 방법론(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의 관점에서, 자국의 국가공약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fair and ambitious)이라고 고려하는지에 대한

4) 결정문 1/CP. 21 paragraph 27: Agrees tha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communicating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may include, as appropriate, inter alia, quantifiable information on the 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time frames and/or periods for implementation, scope and coverage, planning process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those for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s appropriate, removals, and how the Party considers that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s fair and ambitious, in the light of its national circumstances, and how it contribute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이는 2014년의 리마 결정문(1/CP. 20)의 paragraph 14와 동일함.



정보

- 자국의 국가공약이 협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관한 정보

제4조 9항은 ‘국가기여/감축목표’의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매 5년마다 국가기여/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10항은 ‘국가기여/감축목표’에 대해 공동주기를 1차 총회에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1항은 ‘국가기여/감축목표’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각국은 기존의 국가기여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4조 12항은 각국이 제출한 ‘국가기여/감축목표’를 사무국이 운영하는 공적 레지스터리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제4조 13항은 국가기여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기여에 따른 배출과 흡수를 계상함에 있어서, 각국은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 증진해야 하며, 또한 이중계산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제4조 14항은 감축행동 관련 방법론과 지침에 관한 사항이다. 감축행동을 인정함에 있어서, 각국은 협약하의 현재의 방법론과 지침을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5항은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각국은 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대응조치의 영향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특히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 16항, 17항, 18항은 지역경제통합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EU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제4조 19항은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국가는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4조 19항과 관련하여 결정문 36조에서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 특히 금세기 중반을 시계로 하는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invite)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무국이 UNFCCC 웹사이트에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규정되었다. 제14조의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그것이다. 제14조 1항은 당사국총회가 주기적으로 본 협정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2항은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2023년에 시행하며, 그 후 매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3항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가 각국의 행동과 지원을 갱신하고 증진함에 활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4. 파리협정의 시사점

파리 당사국총회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시작된 4년여의 긴 협상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인류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총회로 평가된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주요 그룹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결렬의 위기도 여러 번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회 첫날 150개 국가에서 국가수반들이 모여 협상타결의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완료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마련된 협상초안은

총 90페이지에 224개의 문장과 수많은 옵션과 괄호로 이루어졌었다. 그것이 12페이지에 29조항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파리협정으로 정리되어 합의된 것이다. 파리협정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이행상황에 따라 그 성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파리협정의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한다.

첫째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이다. 물론 개별 조항별 법적 구속력은 조항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정은 사문화되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물론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의 연속선상에서 이행될 것이다.

파리협정은 개별국가 감축목표의 주기적 설정 및 주기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국가기여/감축목표'를 5년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국가기여/감축목표' 설정시 고려토록 함으로써, 공히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범지구적 시스템을 만들었다. 교토의정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빠져 있던 미국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감축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던 개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가히 신기후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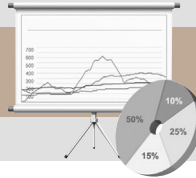
스템에 대하여 위험한 인위적인 간섭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정성적 목적'에 합의한 이후⁵⁾, 20여 년만에 2℃/1.5℃ 온도목표에 합의함으로써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량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2℃/1.5℃ 온도목표는 앞으로의 전지구적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앞으로 2020년 까지 파리협정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감축목표의 상향 방안, 투명성 시스템의 구체화 방안, 시장메카니즘의 구체화 방안,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구체적 방식, 재정지원의 상향 방안, 추가 정보목록 등에 대해 후속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대립은 그 동안의 협상에서 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후속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로, 파리협정의 국내적 의미를 살펴보면, 파리협정 제4조 19항과 결정문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세기 중반을 시계로 하는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의 수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장기 발전전략인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나라는 Post-2020 감축목표로서 2030년의 BAU 배출량 대비 37%의 감축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제 5년 단위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감축목표를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5) 기후변화협약(1992년) 제2조: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Convention and any related legal instrument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adopt is to achiev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참조.



여섯째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로드맵의 도출이 필요하다. 실행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규제와 인센티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단기와 장기 수단도 균형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감축수단 및 그 비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4년여의 협상 끝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파리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탄소, 저배출형 경제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경제에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며,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